

공무직직원관리내규중개정내규(안)

(제 안 요 지)

1. 개정이유 : 공단 정규직 직원의 보수지급일 및 경비직종
소정근로시간 관련규정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보수지급일 일원화

- 정규직(일반, 서비스, 공무직)의 보수지급일을 매월 20일로 일원화

나. 제수당 지급기준 일원화

- 경비직종의 소정근로시간 설정 : 월 243시간

다. 부칙신설 : 적용시기

3. 참고사항

가. 제안근거

- 규정관리규정 제7조(입안) 및 제10조(절차)

나. 절 차 : 이사장 결재 및 후 공포 · 시행

공무직직원관리내규중개정내규(안)

공무직직원관리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5조(보수의지급) 본문 중 “보수는 ---〈중략〉--- 다음달 20일에 지급한다.”를 “보수는 ---〈중략〉--- 매월 20일에 지급한다.” 한다.

제 16조(임금) 제 1항의 별표1 중 2. 지급기준의 “(6)연차수당, (7)시간외수당, (8)야간수당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“부칙”을 다음과 같이 “신설”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 15조 및 제 16조 별표 1의 2. 지급기준 중 (6)연차수당, (7)시간외수당, (8)야간수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제 15 조(보수의지급)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- <중략>- 다음 달 20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.	제 15 조(보수의지급)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- <중략>- 매월 20일에 지급한다. <현행과 같음>	정규직(일반, 서비스, 공무원)의 보수지급일 일원화
제16조(임금) ① 공무원 직원의 임금은 예산범위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초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	제16조(임금) ① 공무원 직원의 임금은 예산범위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초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	경비직종의 소정 근로시간 재산정 (별지참조)
<신 설>	부 칙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 15조 및 제 16조 별표 1의 2. 지급기준 중 (6)연차수당, (7)시간외수당, (8)야간수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	개정규정 적용시기 명시

(현 행)

<별표 1> (제16조 관련)

2. 지급기준

(단위 : 원)

구분	종류 및 금액		시기	비고
(6)	연차수당	통상임금×1/209×8 시간×미사용연차일수	매년 12월	·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미사용 근무 직원 (단, II직렬은 <u>시간당 통상임금×18시간</u> <u>×미사용연차일수÷2(격일)÷12월</u>)
(7)	시간외수당	통 상 임 금 × 1.5/209×시간	매월	· 취업규칙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(단, II직렬은 <u>시간당 통상임금×시간</u> <u>×1.5/270×365일÷2(격일)÷12월</u>)
(8)	야간수당	통 상 임 금 × 0.5/209×시간	매월	· 야간(22시~익일 06시)시간대에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에 예산 범위 내 지급 (단, II직렬은 <u>시간당 통상임금×4시간</u> <u>×0.5/270×365일÷2(격일)÷12월</u>)

(개 정)

<별표 1> (제16조 관련)

2. 지급기준

(단위 : 원)

구분	종류 및 금액		시기	비고
(6)	연차수당	통 상 임 금 ×1/209×8시간× 미사용연차일수	매년 12월	·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미사용 근무 직원 (단, II직렬은 <u>통상임금×1/243×16시간</u> <u>×미사용연차일수÷2(격일)</u>)
(7)	시간외수당	통 상 임 금 × 1.5/209×시간	매월	· 취업규칙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(단, II직렬은 <u>통상임금×1.5/243×시간</u>)
(8)	야간수당	통 상 임 금 × 0.5/209×시간	매월	· 야간(22시~익일 06시)시간대에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에 예산 범위 내 지급 (단, II직렬은 <u>통상임금×0.5/243×시간</u>)